

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(이사) 공개모집 재공고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, 전문성,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
2024년 4월 2일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1 모집 직위 및 직무

직위	모집인원	직무내용	근무형태
이사	2명	1. 이사회 출석 및 서비스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 2.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3. 지역사회 복지분야 공익사업 확대	비상근 (무보수)

2 자격요건

직위	자 격 요 건
이사	-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

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미성년자
- 1의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1의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1의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1의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의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1의7.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, 「지방재정법」 제97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4조제2항제1호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「형법」 제28장·제40장(제360조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다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의8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의9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다.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2. 제22조에 따른 해임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의2.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(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의3.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의4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

나.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공고기간: 2024. 4. 2.(화) ~ 4. 17.(수) / 초일 제외 15일
- 접수기간: 2024. 4. 11.(목) ~ 4. 17.(수) 18:00 / 5일(토·일요일 제외)
- 원서교부: 대전광역시,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의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
- 접수방법: 방문/우편/이메일(recruit@dj.pass.or.kr) 중 택 1

- ※ 방문 제출 시 근무 시간 내 접수(평일 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
- ※ 우편접수 시 봉투 표지에 '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 지원서류' 기재
- ※ 이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
- ※ 접수기간 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접수여부를 접수마감 전 전화로 확인 요망

- 접 수 처: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((우34917)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, 대림빌딩 10층)

5 제출서류

-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- 직무수행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- 경력(재직)증명서 각 1부
- 최종 학력 증명서 1부
-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
※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

6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

구 분	내 용
서류전형	- 심사방법: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무수행요건 자격요건 등 서면심사 - 결과발표: 2024. 4. 26.(금) 예정 /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※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※ 접수결과 응시자 수가 모집인원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※ <u>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접 미 실시</u>

7 유의사항

- 1) 본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2)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.
- 3) 접수여부 미확인,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.
- 4)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신원조회 결과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5)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(이 경우 기존 응시자는 재공공 응시자로 포함)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임명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6)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 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진행하며, 모든 응시자는 진위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7)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청탁을 금하며, 모집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 등의 조치를 합니다.
- 8)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(042-331-898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